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화장품에는 사용금지된 MIT성분이 검출된 독물티슈' 보도, 정정 및 반론보도로 조정성립

A신문사는 한 소비자단체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영유아용 물티슈인 B제품에 허용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인체유해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되었는데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화장품에는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는 일본 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해 화장품에 MIT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해당 중재부는 보도 내용 중 일본 등 외국이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하고, 일부 신청인 회사의 반론을 포함토록 조정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다.

| 초상권 침해 사례 | 동의없이 촬영, 부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C방송사는 도심 속 일탈을 즐기는 캠핑족을 보도하면서 캠핑장에서 길을 잃은 아이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청인 부모와 상봉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다. 신청인 가족은 명시적으로 촬영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방송했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무책임한 부모로 묘사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청인 가족을 촬영, 공표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피신청인을 설득, 당사자들은 VOD 화면 중 신청인들이 나온 부분을 삭제하고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현승 _ 찜통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사람] 표지에 실린 사진 속 시냇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워 보여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재씨 인터뷰 내용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저와 이경재씨는 언론을 바라보는 공통된 견해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압으로 언론을 장악하기보단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칭찬할건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이고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인터넷상에서의 인권유린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악성댓글을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선플운동' 같은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 방안을 구상해 봐야하겠습니다.

이응석 _ '공직자의 민원인 이해 구하기'를 읽으면서 공직자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인데도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 파출소 소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사회가 법과 질서를 따르기 보다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한쪽 말만 듣고 기사화를 하는 대신, 반대편 의견도 참조했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있는 데, 언론인들이 펜의 무게를 느끼면서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형화 _ 8월호 인문학 산책 <아버지는 죽어서도 자녀를 걱정하는 존재다>를 읽고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꼼짝이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길러 왔는지를 암시하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명예나 지위, 체면 유지를 위해 가식적이나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가끔씩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 낳은 죄(?)로 늘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는 무엇이든 능력이 허락하는 한 잘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임도 엿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지나친 자식사랑으로 자식이 부모의존형이 되게 한다거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무 편하고 풍요롭게 해 준다면 자녀들의 자립심이나 인내심, 사회 적응력 등에 큰 폐해가 되기도 한다는 점도 알았으면 합니다.